

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018. 1. 15. ~ 1. 17.)

# 의원 발의 조례안

(조례 5건)

거창군의회



##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8-3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8-4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2018-5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9
2018-6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27
2018-7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3
----------	--------

발의일자	2018. 1. .
발 의 자	박희순, 김종두, 표주숙, 변상원 이홍희, 강철우, 최광열, 형남현 이성복, 권재경, 김향란 의원(11인)

## 1. 제안이유

- 2018년도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 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사항인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 하여 2017년도 월정수당에서 3.5%를 인상하고,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15.1.6.)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거창군의 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금액 변경(안 제6조제2항)
  - 1,703,440원 ⇒ 1,763,060원
-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안 제7조 별표1)
  - 운임과 숙박비 정액 지급 ⇒ 실비 지급

구분	현 행					개 정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야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46,000	실비 (1등급)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1) 「지방자치법」 제33조
-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 (3) 「공무원여비규정」

### 나. 예산 조치 : 시행 시 소요예산 확보

### 다. 집행부의견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703,440원”을 “1,763,060원”로 한다.

제7조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p> <p>① (생 략)</p> <p>② 월정수당은 월 <u>1,703,440원</u>으로 한 다.</p>	<p>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1,763,060원</u> -----.</p>

### [별표1]

###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 동 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개정 사유
의원	실비 (1등급)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 위원⇒의원 ○ 정액⇒실비 ○ 운임 및 숙박비 등 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실제소요비용과 차이가 발생하여 제도 개선 필요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사항 반영하여 조정

#### 비 고

-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철도 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별표 5] <개정 2008.10.8>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 지 급 기준액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11.20., 타법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국외 여행자만 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9.>

②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주일 이내에,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2.9., 2013.3.23.,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전문개정 2010.11.10.] [제목개정 2011.2.9.]

**제9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 [전문개정 2010.11.10.]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임(艇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11.10.]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3.12.11., 2014.11.19.>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2014.11.19.>

[전문개정 2010.11.10.]

**제12조의2(항공권 구매권한)** ① 공무원은 제12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항공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권 구매권한[항공사가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이용 실적을 반영하여 매년 정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부항공운송의뢰를 통하여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권 구매권한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예비예산을 합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권한을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예비예산을 사

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공권 구매권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항공권 구매권한을 정부항공운송의뢰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배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권 구매권한의 배분기준, 사용방법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관용(官用)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2012.1.6.> [전문개정 2010.11.10.]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2.9.,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1.9.>

**제22조(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 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① 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前職) 또는 본직(本職)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외국 근무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이 발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급·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26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 공무원이 국내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입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22조에 따라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는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2.>

③ 제2항에 따른 여비는 7일의 범위에서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가목 해당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 중이던 가족이 1개월 이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외국 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비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10.11.10.]

**제27조(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하거나 병역을 면제받아 귀가하는 사람에 대한 귀가 여비와 휴가자에 대한 여비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의무경찰, 경비교도(警備矯導) 및 의무소방대원으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사람과 휴가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귀가 여비와 휴가자 여비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0.11.10.]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7호(2016.7.4.))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 이하 생략 ~

2. 여비지급 기준

가.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1)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2) 다만,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의 이용과 같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 지급 가능

※ 이동 시간 또는 이동 거리를 비교할 때 유료도로를 대체할 무료도로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3)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

(예 :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나.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다.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라.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 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근무지외 출장시에도 영 제9조(운임) 및 제16조(일비, 숙박비, 식비)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 1)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 2)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 ※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3)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8-4
----------	--------

발의일자	2018. 1. .
발 의 자	박희순, 김종두, 표주숙, 변상원 이홍희, 강철우, 최광열, 형남현 이성복, 권재경, 김향란 의원(11인)

### 1. 제안이유

- 지난 2014년 5월 2일자로 국회에서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하여,
- 전국 시·군·구·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국회규칙에 준용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규칙 개정을 통해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과 배지 교부방식을 통일시키고 사용하는 추세에 따라
-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배지의 교부 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8조(배지 교부)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발급하고 발급대장(별표4)을 관리하여야 한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 (2)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

나. 예산조치: 시행시 소요예산 확보

다. 집행부의견조회: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

##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① “의원 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를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발급하고 발급대장(별표 4)을 관리하여야 한다.” 로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배지 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p> <p>② (생 략)</p>	<p>제8조(배지 교부) 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고 발급대장(별표4)을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제4호서식]

### 의 원 배 지 교 부 대 장 (제8조제1항 관련)

연번	대 상 자			수량	결 재		
	의원명	지역구	생년월일		담당자	담당주사	과장

## ● 관련법령 발췌

###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8조(배지 교부) ① 국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 참고자료

- 관련법령: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 기타자료: 의회기 및 의원배지모형 선정통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216)
- 입법예고: 2016. 11.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 경남시·군의회

시군	배지교부방법	시군	배지교부방법	비고
도의회	의원등록 시	의령	의원등록 시	
창원	의원별로 교부	함안	선거구 순서 번호순	
진주	선거구 순서 번호순	창녕	의원등록 시	
통영	의원등록 시	고성	의원별로 교부	
사천	의원등록 시	남해	의원등록 시	
김해	의원등록 시	하동	의원등록 시	
밀양	선거구 순서 번호순	산청	선거구 순서 번호순	
거제	의원등록 시	함양	선거구 순서 번호순	
양산	선거구 순서 번호순	합천	의원등록 시	

#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박희순 의원 대표 발의 )

의안 번호	2018-5
----------	--------

발의일자	2018. 1. 4.
발 의 자	박희순, 강철우, 이성복, 변상원 김향란, 최광열, 이흥희, 권재경 표주숙, 김종두 의원 (10인)

## 1. 제안이유

- 최근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 다. 아동학대 예방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제12조, 제17조 및 제4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 4,000천원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8. 1. 8. ~ 1. 13.
    - (나) 예고결과: 해당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제정현황(2개소): 경상남도, 사천시

##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을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 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와 정책수립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제공)**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단체 현황 등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5.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강철우 의원 대표 발의 )

의안 번호	2018-6
----------	--------

발의일자	2018. 1. 4.
발 의 자	강철우, 박희순, 이성복 표주숙, 변상원, 김종두 의원 (6인)

## 1. 제안이유

-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 목격자가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라. 심폐소생술 교육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마. 홍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및 제16조
-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 20,250천원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보건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8. 1. 8. ~ 1. 13.
    - (나) 예고결과: 해당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제정현황: 없음
  - (7) 전국 제정현황(31개소) : 광양시, 목포시, 여수시, 영광군 등 31개소

##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 목격자가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자(이하 “고위험군 환자”라 한다)의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한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①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은 누구나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이·동장
  4. 군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표창)** ① 군수는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에 공헌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군수는 군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7
----------	--------

발의일자	2018. 1. .
발 의 자	형남현, 강철우, 이성복 의원 (3인)

### 1. 개정이유

-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에 따라 시행 전에 태양광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에 따른 적용 시점을 변경함.(부칙안 제2조)
- ※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도시건축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8. 1. 9. ~ 1. 14.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4): 사천, 산청, 함양, 고성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조례 제2376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태양광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칙(조례 제2376호 일부개정 '1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조례 제2376호 일부개정 '17.5.10.) 제1조(시행일) ----- -----.</p> <p>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p>

## ● 관련법령 발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7.16.>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2.3., 타법개정]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의2] <개정 2016. 6. 30.>

### **개발행위허가기준** (제56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p>(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p> <p>(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p> <p>(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b>조례</b>(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b>조례</b>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 style="margin-left: 20px;">(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p> <p style="margin-left: 20px;">(나) 삭제 &lt;2016. 6. 30.&gt;</p> <p style="margin-left: 20px;">(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b>조례</b>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 style="margin-left: 20px;">(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b>조례</b>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b>조례</b>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나. 도시·군관리계획	<p>(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p> <p>(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다. 도시·군계획사업	<p>(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p> <p>(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p>



<p>라. 주변지역 과의 관계</p>	<p>(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p> <p>(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p>
<p>마. 기반시설</p>	<p>(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p> <p>(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p> <p>(3) 도시·군계획<b>조례</b>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p>
<p>바. 그 밖의 사항</p>	<p>(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p> <p>(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p>

##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 기준
<p>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p>	<p>(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p> <p>(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b>조례</b>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나. 토지의</p>	<p>(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p>

형질변경	<p>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숫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흠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p> <p>(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b>조례</b>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p>
다. 토석채취	<p>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b>조례</b>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라. 토지분할	<p>(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p> <p>(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b>조례</b>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p> <p>(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토지와 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li> <li>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li> <li>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li> </ol> <p>(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p> <p>(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b>조례</b>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p> <p>(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p>(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p> <p>(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p> <p>(라) &lt;삭제&gt;</p> <p>(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p>

	<p>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li> <li>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li> <li>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li> </ol> <p>(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p>
<p>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p>	<p>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b>조례</b>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허가 기준
<p>가. 시가화 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li> <li>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li> </ol>
<p>나.유보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li> <li>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li> </ol>
<p>다.보전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일 것</li> <li>2)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li> </ol>

##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시행 2015.8.13]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2015.8.13, 타법개정]

### 제1장 총 칙

#### 제1절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및 운영원칙

1-2-1.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1-2-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3. 이 지침은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